

제71차 언론인권포럼

방송보도의 인권보호 실천, 어떻게 되고 있나?
- 방송보도의 인권보호 실천 현황 분석 세미나

사회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발제 1. 인권보호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보완점
 허찬행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2. 인권보호 실천 중심의 방송보도를 위한 방향성
 - 모니터링 분석 및 방송심의결과를 중심으로
 한상희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토론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원 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장슬기 기자 (미디어오늘)

인권보호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보완점

허찬행(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목차

I 서론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1. 신문윤리강령
2. 신문윤리 실천요강
3.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4. 인터넷신문 기사 심의 규정
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 모니터링 사례

III 논의

| 서론

- 인권보도준칙

2011년 9월 23일 제정 / 2014년 12월 16일 개정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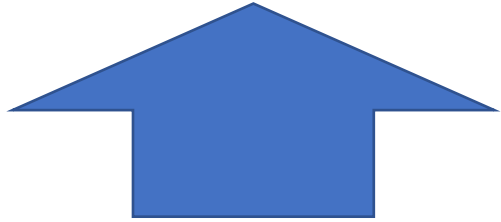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I 서론

-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의제로 확산, 제도 정착을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서 인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가?

차별적이지 않은 ‘다름’과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인권보호에 충실한 언론보도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 언론 현실은 어떠한가?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1. 신문윤리강령

-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민주발전, 사회통합, 사회통합,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1957년 4월 7일「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 제1조 언론의 자유 / 제2조 언론의 책임 / 제3조 언론의 독립 / 보도와 평론 / 제5조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 제7조 언론인의 품위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실천요강

1957년 4월 7일 제정/ 1996년 4월 8일 전면개정/ 2009년 3월 4일 부분개정/

2016년 4월 6일 부분개정/ 2021년 4월 6일 부분개정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실천요강

-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 제2조 취재준칙
- 제3조 보도준칙
- 제4조 사법보도준칙
-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제6조 보도유예 제한
-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준중
- 제8조 저작물의 전제와 인용
- 제9조 평론의 원칙
- 제10조 편집지침
- 제11조 명예와 신용준중
- 제12조 사생활보호
-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 제16조 공익의 정의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③ (사회적 책임)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2조 취재준칙

제2조 취재준칙

언론인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된다.

① (신분 사칭·위장 금지)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

② (자료 무단 이용 금지) 문서, 자료,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콘텐츠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재난 및 사고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재난 등의 수습 및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④ (전화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취재) 취재원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디지털 기기 등으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재해서는 안 된다.

⑥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3조 보도준칙

제3조 보도준칙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보도)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③ (반론의 기회)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④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⑤ (보도자료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루어도 안 된다.
- ⑦ (재난보도의 신중)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⑧ (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 ⑨ (피의사실 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⑩ (표준어 사용)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4조 사법보도준칙 /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보도·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재판 부당 영향 금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보도·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언론인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①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②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④ (취재원과과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했을 때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보도해서는 안 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피의자 · 피고인 · 참고인 등 촬영 신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을 존중하되 최대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18세 이하)일 경우 이름 ? 사진 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 제12조 사생활 보호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명예·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을 할 때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 ①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디지털 기기 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 퇴폐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 청소년(19세 미만)이나 어린이(13세 미만)와 접촉하거나 촬영 ?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 ? 음란 ? 약물사용 ?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④ (유괴 · 납치 보도제한 협조)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괴 · 납치된 경우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 등의 보도제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표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적

결정	일간신문 및 통신(기사)							
	취소	기각	주의	경고	공개경고	사과	관련자경고	총계
2016년	-	2	876	35	-	-	-	913
2015년	1	3	843	65	-	-	-	912
2014년	-	2	707	52	-	-	-	761
2013년	1	1	777	34	-	-	1	814
2012년	1	1	629	33	-	-	-	664
2011년	-	4	622	40	-	-	-	666
2010년	-	3	563	68	-	-	-	634
2009년	-	1	442	36	-	-	-	479
2008년	3	1	415	312	19	-	-	750
2007년	-	-	581	314	35	1	-	931
2006년	-	-	448	153	4	-	-	605

결정	온라인신문(기사)									
	취소	기각	주의	경고	공개경고	사과	관련자경고	총계		
2016년	1	-	498	66	-	-	-	565		
2015년	-	-	273	65	2	-	-	340		
2014년	-	-	162	18	-	-	-	180		
계	1	0	933	149	2	0	0	1,085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2. 신문윤리 실천요강

-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재)
 - ✓ 주의 / 경고 / 공개경고 / 정정 / 사과 /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
 - ✓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 공개경고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전 신문사의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 보도하게 함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경제적 제재 또는 사회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는가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 언론 윤리와 인권보호의 접점은 어디인가?
 - 총 16개조 중 ‘인권’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뿐임
 - 그렇다면 다른 조항은 언론 윤리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것과 무관한 것인가의 문제
 - 즉, 언론의 인권보호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제7조의 내용만을 실천할 경우 언론이 인권보호 내지는 인권존중의 윤리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
- 따라서 언론의 인권보호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언론의 인권 존중, 인권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3.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제정 : 2011. 03. 23/ 부분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전문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3.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 제1 조 언론의 자유
- 제2 조 언론의 책임
- 제3 조 인격권 보호
- 제4 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 제5 조 저작권 보호
- 제6 조 이해 상충
- 제7 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 제8 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 제9 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 제10 조 이용자 참여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4. 인터넷신문 기사 심의규정

제정 : 2014. 12. 19 / 부분개정 : 2015. 12. 17 / 부분개정 : 2017. 12. 07 /

전면개정 : 2019. 12. 26 / 부분개정 : 2021. 12. 20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정 취지 및 이념에 따라 자율심을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심의규정입니다.

심의규정의 규범적 특성상 이에 동의,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심의규정에 근거한 자기규율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4. 인터넷신문 기사 심의규정

- 3장 26조로 구성
-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정의 규정(제1조~제2조)
- 제2장 심의기준은 제1절 보도원칙, 제2절 권리보호, 제3절 이해상충을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20조)
- 제3장은 보칙(제21조 ~ 26조)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4. 인터넷신문 기사 심의규정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일반보도원칙	제2절 권리보호
제3조(보도의 정확성)	제10조(인격권 보호)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제12조(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제6조(제목의 원칙)	제13조(범죄 및 자살보도)
제7조(여론조사의 보도)	제14조(재난보도 및 감염병 보도)
제8조(통계조사의 보도)	
제9조(사진 등의 사용)	



- 제10조(인격권 보호) - 명예훼손 금지,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초상권의 보호, 사생활보호, 미성년자 보호
-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 제13조(범죄 및 자살보도)-피해자 보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 공개,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 죄 등과 관련한 보도, 성폭력 범죄 보도, 자살보도
- 제14조(재난보도 및 감염병 보도) 인권보호, 예단 금지, 자극적 묘사 지양, 피해수습 방해 금지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표 2〉. 2022년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통계

회차	기각	권고	주의	경고	합계
제1차(01/13)	14	3	190	0	207
제2차(01/27)	13	1	171	2	187
제3차(02/10)	13	2	152	3	170
제4차(02/24)	29	1	205	0	235
제5차(03/10)	18	3	215	0	236
제6차(03/24)	19	1	215	0	235
제7차(04/14)	29	2	345	4	380
제8차(04/28)	24	1	232	0	257

회차	기각	권고	주의	경고	합계
제9차(05/12)	22	0	236	2	260
제10차(05/26)	19	8	232	2	261
제11차(06/09)	16	0	233	0	234
제12차(06/23)	37	1	221	4	263
제13차(07/14)	42	1	344	0	387
제14차(7/28)	48	0	227	1	276
제15차(8/11)	8	1	182	1	192
제16차(8/25)	23	2	233	1	259
제17차(9/15)	36	0	335	2	373
제18차(9/29)	43	3	229	0	275

출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4. 인터넷신문 기사 심의 규정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심의 결과, 기사심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어떤 항목에 대한 심의 결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사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즉, 어떤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한 눈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격권 보호, 차별적 표현 금지, 범죄 및 자살보도, 재난보도 및 감염병 보도 관련 각 조항의 심의결과 통계가 있다면 심의 대상 언론사의 인권 관련 보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임
- ‘인권보호’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조항은 제14조 재난보도 및 감염병보도 제1항 인권보호 가 유일함.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만을 준수하면 언론이 인권보호의 윤리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의 문제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총 4장 70조와 보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에서는 심의규정의 목적(제1조), 용어 정의(제2조), 적용범위 등(제3조), 심의의 방법(제4조), 심의의 기본원칙(제5조), 자체심의(제6조), 방송의 공적책임(제7조), 지상파방송의 책임(제8조) 등을 규정
- 제2장 일반기준은 총 9개 절로, 공정성(제1절), 객관성(제2절), 권리침해 금지(제3절),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3절의2), 윤리성(제4절), 소재 및 표현기법(제5절), 어린이·청소년 보호(제6절), 광고효과 등(제7절), 방송언어(제8절), 기타(제9절) 등
- 제3장과 4장은 각각 심의절차와 보칙으로 구성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으로는 제3절(권리침해금지),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3절의 2), 윤리성(제4절), 소재 및 표현기법(제5절), 어린이·청소년 보호(제6절) 등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제2장 일반기 준	제3절	권리침해 금지	제19조	사생활 보호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1조	인권 보호
	제3절의 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제21조의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제21조의3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제22조	공개금지
			제2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제24조의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4조의3	피해자의 안정 등
			제24조의4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제4절	윤리성	제25조	윤리성	
		제26조	생명의 존중	
		제27조	품위 유지	
		제28조	건전성	
		제29조	사회통합	
		제30조	양성평등	
		제31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	신앙의 자유 존중			
제33조	법령의 준수	27		
제34조	표절금지			



제21조만 준수하면 되는가?

-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뒷장에 계속)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제2장	일반기준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	성표현
				제36조	폭력묘사
				제37조	총격.혐오감
				제38조	범죄 및 약물묘사
				제38조의2	자살묘사
				제39조	재연.연출
				제40조	성기,성별 등의 표현
				제41조	비과학적 내용
				제42조	의료행위 등
				제42조의2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44조		수용수준	
		제45조		출연	
		제45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6.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 모니터링 사례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공정성, 객관성, 인권보호 항목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여 자사의 5개(2021년 상반기 6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도에 반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 기준에서 인권 보호’는 심의규정 제2장(일반기준) 제3절(권리침해금지), 제3절의2(재난 등에 관한 방송), 제4절(윤리성), 제5절(소재 및 표현기법)의 조항 중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
- 방송사업자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시 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를 받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준은 심의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



JTBC의 인권보호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과 이를 보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심의기관의 심의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볼 수 있음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표 3〉 JTBC의 방송심의 규정을 토대로 ‘인권보호’ 모니터링 지표 설계

항목	세부항목	세부 기준
권리 침해 금지 및 보도윤리	사생활보호	보도 대상에 대한 사적 내용(전화, 통신 등) 공개
		개인 초상권에 대한 무단한 침해
	권리보호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 또는 촬영한 내용 공개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표현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에 대한 부정적 표현
		보도 내용에 대한 비공개적 취재(암행, 잠복, 몰래 촬영 등)
	양성평등	보도 내용에 대한 강제 취재, 답변강요, 유도신문 등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조장
		특정성을 부정적·희화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을 정당화
문화다양성존중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	
	타민족이나 타인종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신앙의자유존중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는 내용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표 3〉 JTBC의 방송심의 규정을 토대로 ‘인권보호’ 모니터링 지표 설계

범죄 보도	범죄 보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으로 단정 짓는 보도 범죄 행위를 과장·정당화 하는 듯한 보도
	충격혐오감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 이용 폭력·살인 등 범죄내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범죄의 수단과 흉기사용방법 또는 약물 사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마약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에 대한 구체적 묘사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얼굴, 음성, 그 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 공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 범죄 사건에 직접 관계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에 대한 당사자 동의 없는 공개
	성폭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번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 및 혐오감 조장

II 언론의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실천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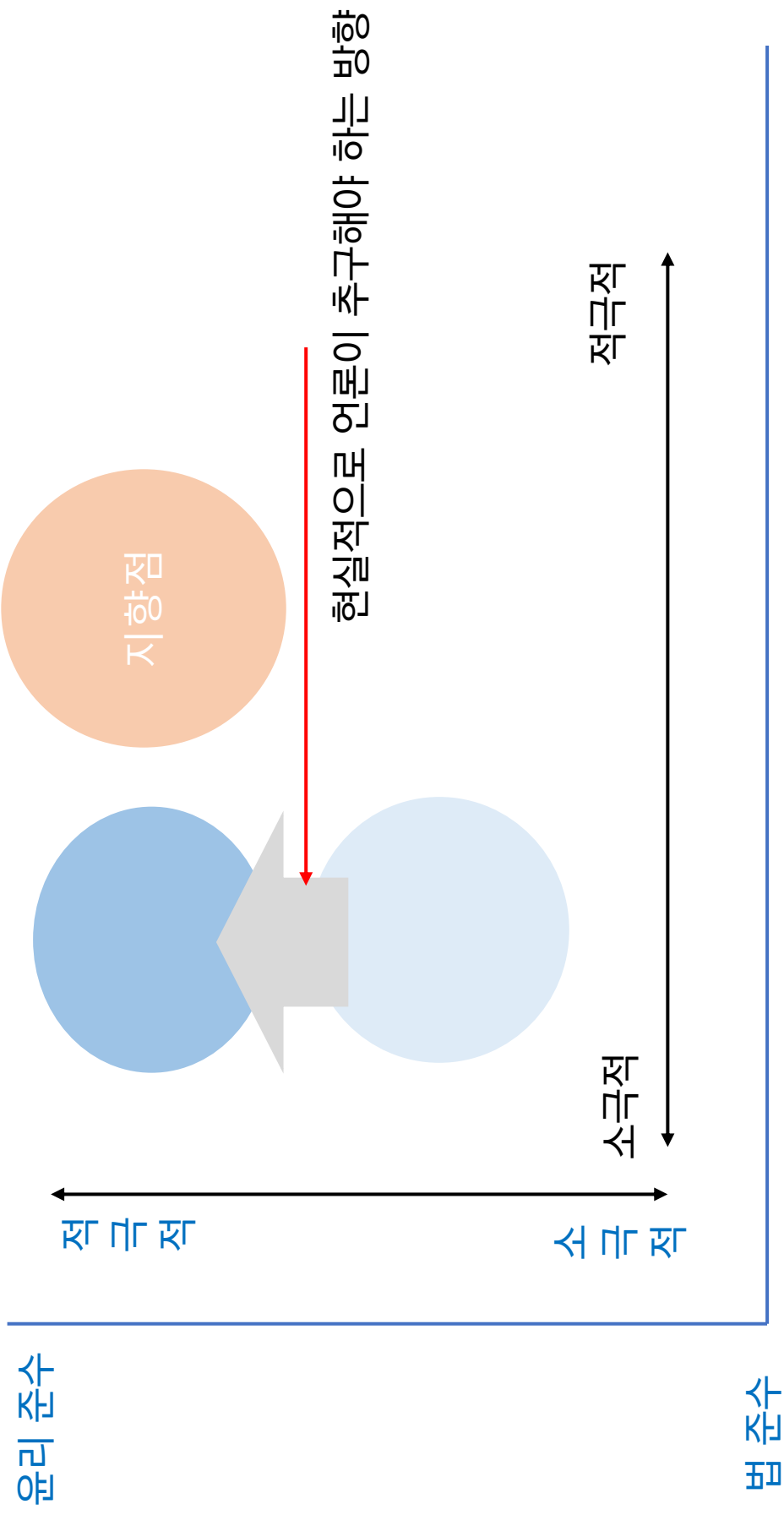
〈표 3〉 JTBC의 방송심의 규정을 토대로 ‘인권보호’ 모니터링 지표 설계

자살	자살 장면에 대한 직접적 묘사
	자살을 미화·정당화하는 보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
	자살자 및 유족의 인적사항 공개
재난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
	피해 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인적사항을 공개
	피해자 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권리침해 금지 및 보도 윤리, 범죄, 성폭력, 자살, 재난 등 5개 카테고리 중심으로 사건사고 보도, 범 죄보도, 성폭력 보도, 자살보도, 재난보도를 ‘인권보호’ 항목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기준으로 활용

III 논의

〈그림 1〉 언론 보도의 ‘인권보호’ 실천 방향



III 논의

- 인권보호 지표를 통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 의 범위가 합의 되어야 함
 - 각각의 강령이나 심의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의 내용들은 일관적이지 않음. 때문에 모든 것이 넓은 의미로 ‘인권보호’ 를 위한 언론의 윤리적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소하게 ‘인권보호’ 또는 ‘인권존중’ 이라고 명시된 조항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 함
 - 각각의 강령이나 심의규정 등에서의 내용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있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의 준수 여부를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기에는 모호한 한계
 - 이슈로 부각되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언론이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현재의 준칙이나 가이드라인, 강령 등은 언론 전반이 어느 정도 인권친화적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III 논의

▪ 법적 규정 준수는 소극적 형태의 인권 보호,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 형태의 인권보호라 할 수 있음. 또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제화 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권 증진 활동이라 할 수 있다면, 일상적 보도 행위속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인권보호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 실천 요강,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통해 언론사 및 기자들이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활동의 영역이면서, 규정은 주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형태의 인권보호 활동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각 언론사들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인권보호의 범위가 각 규정마다 상이한 측면이 있고, 명시적인 ‘인권보호’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만 준수하는 것으로 인권보호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음. 현실적으로 우리 언론보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은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그림 1)참조)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언론보도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합의할 수 있어야 함
- 각 기준에서 어떤 항목들이 꼭 적극적으로 언론사나 기자가 준수해야할 윤리의 영역에서 인권보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다면, 우리 언론보도의 인권보호의 측면을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III 논의

- 협회 차원의 윤리강령이나 심의규정, 언론사 자체적인 강령 등에서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체계로 인해 일관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들 중 공통분모를 찾아야 함.
 - 인권보호준칙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의 윤리 강령이나 심의규정에 포함된 조항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영역으로 범위를 정한다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의 활동속에서 언론의 ‘인권보호’ 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협회나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실천 또한 필요함. 이를테면 ‘인권보호’항목에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을 통계처리 결과로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 이 경우 ‘인권보호’ 항목의 위반 건수, 처리 결과 등의 현황을 토대로 언론의 인권보호 현황을 알 수 있음
 - 현황 파악과 더불어 보다 명확하게 합의된 ‘인권보호’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보도의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인권보호 실천 중심의 방송보도 현황분석

-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언론인권센터 모니터링팀

I. 서론

방송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을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양성평등, 차별 금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항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의 핵심은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도의 경우 인권증진을 위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도하는 것은 물론 보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매체 다채널 시대 보도 매체 간 경쟁 심화와 TV이용률의 감소 등으로 방송 보도에서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요인은 방송 보도에서 인권 보호에 소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은 방송의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등 부문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히 취재보도 현장에서는 심의규정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심의규정과 인권보도준칙을 토대로 설계한 '인권보호지표'¹⁾를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의 방송심의 현황 중 양성평등, 인권보호, 범죄 및 약물 묘사, 자살묘사, 사생활 보호, 윤리성,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등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도교양 프로그램 등의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심의기구의 관점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권보호 관점의 방송 보도 모니터링

1. 분석 대상

- KBS1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OBS <뉴스중심>, JTBC <뉴스룸>,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A>, MBN <MBN종합뉴스>

2. 분석 기간

- 2022년 4월~2022년 8월
- 월 별 8회 (주간뉴스 6회, 주말뉴스 2회), 채널 별 40회, 총 320회

3.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항목

(1) 뉴스 주제 분류 (S, Subject)

번호	분야	설명
1	정치	대통령, 정부 발표, 행정, 공공정책, 외교, 남북문제, 북핵문제, 정당,

1) 본 모니터링에 사용된 '인권보호지표'는 <심영섭·허찬행, 'JTBC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진단평가보고서', 2021>에서 설계한 것으로 해당 연구자와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항목을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정치인, 선거 등
2	경제	경제종합, 기업, 시장, 세계경제, 재테크, 부동산, 주식, 금융, 보험, 투자 등
3	사회	노사관계, 사건사고, 화제, 미담, 사법관련, 부음, 인물, 의료 건강, 교육, 환경, 생활정보 등
4	연예문화	과학기술, 학술, 책, 영화, 공연, 만화, 음악, 미술, 미디어, 여가, 연예계소식, 연예인 등
5	스포츠	스포츠 관련 소식
6	국제	다른 나라 소식, 국제관계, 전쟁, 테러리즘 등
7	기타	날씨 등

(2) 주제별 세부 유형

항목	C1	C2	C3	C4	C5	C6	C7
	갈등유무	사건사고	범죄	성폭력	자살	재난	어린이, 청소년
해당	Y	Y	Y	Y	Y	Y	Y
	↓	↓	↓	↓	↓	↓	↓
필수 체크항목	F	E	CR	SV	SU	D	CH
	공정성	권리보호 및 보도윤리	범죄보도	성폭력	자살	재난	어린이, 청소년 보호

- ① 갈등이나 대립 사안일 경우 공정성 항목을 평가하는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항목만 평가하므로 갈등유무 항목(공정성 및 객관성)은 제외하였다.
- ② 사건사고 일반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건사고 및 폭로, 의혹제기 등이다.
- ③ 범죄보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관련, 법원의 유무죄 판결 관련 사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 ④ 성폭력은 성폭력 의혹제기, 폭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관련, 법원 판결 등이 성폭력에 관한 것일 경우이다.
- ⑤ 재난은 사건사고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도 시점에서 판단하며 인명피해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일반 사건 사고와 비교해 큰 대형 산불, 대형 사고가 현재 진행 중일 경우로 분류한다.
- ⑥ 어린이·청소년은 주로 어린이 학대사건이나 어린이·청소년 가해자가 보도될 경우이다.

4. 인권보호 지표를 활용한 보도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²⁾

(1) 사건사고 보도 모니터링 결과

2)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으로 체크하였음
- 각 항목에 대해서 중복체크가 가능하며 '해당없음' 내용은 빈도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1> KBS1 '뉴스9'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kbs1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95	3	98
	%	96.9	3.1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98	0	98
	%	100	0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9	0	9
	%	100	0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 6월29일, 완도 실종 일가족 추정 3명 숨진 채 발견...사망경위 조사 :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 임과 동시에 아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이를 포함해 사망한 일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격에도 부합, 사망한 아이의 신원(10살, 조유나)이 보도에 언급됨. 또한 부모의 인터넷 검색기록(수면제, 가상화폐)의 일부를 공개함.
- 7월28일,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해병대서 또 가혹행위 폭로 : 피해자가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 8월11일, 박민영 '일베 흔적'논란...대통령실 '문건 유출자'감찰 : 공직자의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표2> MBC '뉴스데스크'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MBC '뉴스데스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50	5	155
	%	96.8	3.2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153	2	155
	%	98.7	1.3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11	2	13
	%	84.6	15.4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6	0	6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6	0	6
	%	100	0	100

- 4월20일, 유명 의사의 '꼼수' : 대학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자신과 동명이인인환자 정보를 빼돌려 세금 신고를 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이 의사의 SNS를 공개함.
- 5월4일, 조개 잡아 밀물에.. : 조개를 줍다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가 개그맨 김병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공개라고 판단함.

- 6월13일, 가스라이팅여중생...성매매까지 :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공개, 범행 방법 상세하게 보도, 남중생은 흔히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중생 표현은 차별적.
- 7월7일, 제주에서 사흘 만에 또 대형 어선화재..2명 실종, 3명 중상 : 어선 화재사건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이라는 정보는 사건과 무관하고 불필요한 정보로 보임.
- 7월15일, '반도체 우수사원'의 극단 선택..필리핀 공장에서 무슨 일이 : 사건의 사실성과 폭언 가해자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은 있지만 폭력적인 내용의 발언들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됨.

<표3> SBS '8뉴스'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SBS '8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48	5	153
	%	96.7	3.3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152	1	153
	%	99.3	0.7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7	1	8
	%	87.5	12.5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 5월9일, '강제 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 : 해당 중학생 관련 뉴스는 큰 문제는 없지만 또 다른 초등생을 학대하는 CCTV영상을 모자이크하였는데 관장이 아이를 때리는 모습,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공개.
- 6월29일, 인양 차량 안엔 일가족 시신..'루나'수면제' 검색했었다.
- 7월4일, 신호 어기고 도주한 흑인..60발 총격 사살한 경찰 : 총격전의 상황의 그대로 화면으로 보도되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반드시 공개되었어야 할 영상인지 의문이며 사망한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었는데 유족 측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임.
- 7월28일, 장애인은 아닌 '경계선 지능'...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 청소년들의 동의를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의를 하였다 해도 장애, 왕따와 같은 주제의 보도에서 청소년들의 얼굴 노출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
- 7월31일, 경기 화성서 우즈백인 흥기에 찢려 사망...경찰 수사 : 살인 피해자 우즈백인이 흥기에 찢려 힘겹게 걷는 장면 노출, 살인사건과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우즈백인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여지가 있음.

<표4> OBS '뉴스중심'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OBS '뉴스중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55	1	56
	%	98.2	1.8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56	0	56
	%	100	0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15	2	17
	%	88.2	11.8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6	0	6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6	0	6
	%	100	0	100

- 6월29일, '실종' 조유나 양 가족 탑승 승용차서 시신 3구 발견 : 실종된 일가족의 시신 발견 소식에서 아동의 이름을 그대로 명명함. 실종신고가 되어 공개가 되었던 상황이지만 발견된 후에는 다시 익명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됨.
- 7월4일, 초등생이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 흉기로 위협 : 보도 내용에서 "담임 교사인 '여교사'가 제지하였으나..."로 표현하여 불필요하게 성별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음.
- 7월7일, 유흥주점 종업원, 손님 사망...차에 마약 2천 명분 : 중요한 것은 마약과 사망의 인과관계인데 종업원에 대해 불필요하게 '여종업원'으로 표현.

<표5> 채널A '뉴스A'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채널A '뉴스A'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59	9	168
	%	94.6	5.4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167	1	168
	%	99.4	0.4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9	2	11
	%	81.8	18.2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 4월4일, 계곡살인 조현수, 네티즌 100명 고소해 합의금 챙겨 : 이은혜-남편과의 메신저 내용 공개
- 4월15일, "도박사이트 해킹 당해" 피해자에게 돈 요구한 이은혜 : 불필요한 SNS 사진 노출 및 SNS대화 공개.
- 4월20일, 이은혜 자필진술서 입수..숨진 남편 언급 없이 복어독 부인만 : 불필요한 SNS 사진 노출 및 진술서 공개
- 4월20일, 기회라는 밧줄 달라...이은혜의 '이중 태도' : 불필요하게 진술서 공개

- 5월4일, 갯벌서 조개 캐던 70대 참변...개그맨 김병만 모친상 : 70대 여성이 개그맨 김병만 씨의 모친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에 포함됨

<표6> TV조선 'TV CHOSUN 뉴스9'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TV조선 'TV CHOSUN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218	6	224
	%	96.9	3.1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223	1	224
	%	100	0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7	2	9
	%	77.8	22.2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6	0	6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 6월29일 : 인양 차량서 시신 3구 발견..“실종 일가족과 옷차림 동일” : 아동의 실명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의 검색 내용 등 사적인 통신 내용 보도.
- 7월4일 : 대낮 음주운전자 배송기사가 잡았다 : 검은 벤츠 음주운전자의 도주를 택배기사가 추격해 잡았다는 기사인데 외제차라는 사실은 사건에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강조,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
- 7월28일, 고교 동급생 무차별 폭행...옆에선 촬영 : 폭행현장을 말리는 학생이 ‘여학생’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치 여자는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7월28일, 안전모 없이 질주...위험천만 전동 킥보드 : 다른 사건 당사자의 성별은 밝히지 않았으나 10대 두 명의 사건에서만 여성이라 명시, 불필요한 정보이며 성별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음.
- 8월21일, 만취 20대 뺑소니 후 질주...시민에 덜미 : 음주 운전자를 시민이 잡았다는 내용인데 외제차 여부는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함.

<표7> MBN 'MBN 종합뉴스'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MBN 'MBN 종합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254	9	263
	%	96.6	3.4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261	2	263
	%	99.2	0.8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15	1	16
	%	93.8	6.2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12	0	12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12	0	12
	%	100	0	100

- 6월21일, 민주, 징계 '갑론을박'...국힘, 성 상납 곧 결론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유리위 명단이 잘못 적혀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잘못된 명단의 사진을 실명이 보이도록 노출함
- 6월29일, 완도 실종가족 시신 확인...'루나'검색 왜? : 사적인 경제상황과 검색 내용을 공개
- 8월29일, 수업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 만지작...교권침해, 몰래촬영 조사 : 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표8> JTBC '뉴스룸' 사건사고 보도 빈도분석

JTBC '뉴스룸'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E1. 보도 대상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전화, 통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243	5	248
	%	97.2	2.8	100
E2.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빈도	248	0	248
	%	100	0	100
E3.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빈도	13	0	13
	%	100	0	100
E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E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6	1	7
	%	85.7	14.3	100

- 4월4일, 택배건 아버지 '후원 받고 잠적, 실제 병원비는...' : 보도 대상의 SNS 사진, 유튜브 활동명과 영상, 메신저 내용 공개
- 4월4일, 저격 글로 시작된 사이버 학폭...목숨까지 잃었다 : 피해자가 쓴 쪽지(유서)공개, 피해자 사진 공개, 다만 유가족의 공개허용 여부는 알 수 없음.
- 4월15일, 정호영 아들 '현역'판정 5년 뒤 '공익'받았다 : 봉사활동 기록 문서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송출
- 5월9일, "친해지려면 신체 사진 좀" 한국인 친구 사귀려다..: 피해자와의 인터뷰 통한 얼굴, 이름(가명), 목소리, 출신국가 공개, 성희롱 카톡방 내용 일부 그대로 공개
- 6월29일, 실종 직전 '수면제, 루나'검색...주변선 "코인 투자 실패" : 조유나양 실명 사용, 사

적인 경제 상황이나 생활, 투자, 검색기록 등 공개.

- 6월29일, 상관 갑질에 세상 등진 새내기 소방관 또 있었다 : 괴롭힘 당하는 메시지 내용 공개

(2) 범죄보도 모니터링 결과

<표9> KBS1 '뉴스9' 범죄 보도 빈도분석

KBS1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60	0	60
	%	100	0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60	0	60
	%	100	0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59	1	60
	%	98.3	1.7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60	0	60
	%	100	0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60	0	60
	%	100	0	100

- 올해도 여전한 '개지옥'..도살 현장 '신고 반발' 되풀이 :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죽은 개의 털을 태우는 장면, 개가 도살되어 있는 장면 등을 짐작할 수 있게 표현, 인권은 아니지만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판단.

<표10> MBC '뉴스데스크' 범죄 보도 빈도분석

MBC '뉴스데스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105	1	106
	%	99.1	0.9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06	0	106
	%	100	0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99	7	106
	%	93.4	6.6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00	6	106
	%	94.3	5.7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06	0	106
	%	100	0	100

- 4월4일, 하운드 4마리 '돌진',푸들 죽고 주인 다쳐 : 대형견 4마리가 사람 한 명과 소형견을 공격하는 영상 송출.
- 4월4일, 옷 벗겨졌는데 단순 폭행?... "늑장 수사" : CCTV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는 되었지

만 폭력 상황이 그대로 송출됨.

- 4월20일, 이번엔 입 묶은 채 생매장..제주서 애견학대 잇따라 : 입이 묶인 채 코만 나오게 생매장된 강아지의 사진과 그 외 학대당한 개 사진이 전혀 모자이크없이 노출.
- 5월25일, 내부 고발자 '보복 폭행' :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공개, 범행 방법 상세하게 보도,
- 6월13일, 가스라이팅 여중생..성매매까지 :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공개, 범행 방법 상세하게 보도
- 6월13일, "메시지 지우고 '비행기 모드'로" : 범행의 방법을 상세하게 공개, 폭력이나 살인의 묘사는 아니지만 수법의 상세한 묘사는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 6월13일, 성추행 저항하자 집단 폭행 : 중국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추행에 저항하자 집단폭행을 하는 영상,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변조없이 노출.
- 6월21일, "간병인 학대 피해자 더 있다" : 폭언 음성파일 공개
- 6월24일, 초등학교 앞 고양이 학대 : 고양이 사체가 매달린 사진 공개,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고양이 사체가 노끈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충분히 식별가능함.

<표11> SBS '8뉴스' 범죄 보도 빈도분석

SBS '8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89	2	91
	%	97.8	2.2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91	0	91
	%	100	0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83	8	91
	%	100	0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87	4	91
	%	95.6	4.4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91	0	91
	%	100	0	100

- 4월4일, "상항극하자" 채팅앱 유도에 범행...'중형'받는다 : 취재기자가 사건 발생 지점인 초 등생의 집 앞을 취재하는데 집 자체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CCTV영상과 함께 본다면 주민들은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월7일, '강제식사' 처음이 아니었다..CCTV 속 장면 보니 : 피해자의 실명(고 장희원씨) 및 학대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 피해 사실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음.
- 4월7일, "호구 1명 있다,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 : 피해자의 실명(고 김준호씨)과 가해자 2명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CCTV영상을 공개하며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함.
- 4월7일, 가평계곡 사망 당일 영상 공개...겁먹은 고인 두고 조롱 : '그것이 알고 싶다'PD가 입수한 범죄 당일 영상을 공개하며 가평 계곡 사망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함.
- 5월9일, 강제 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 : (중복)
- 6월13일, 여성 택시기사에 폭언 폭행..이짓까지도 했다 : 여성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

행을 가하는 블랙박스 영상(모자이크 처리)과 음성을 공개함.

- 성추행 반발에 '집단 폭행'...발각 뒤집힌 중국 : 중국에서 남성 7명이 여성 4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모자이크가 거의 되지 않은 CCTV영상을 공개함.
- 7월4일, 신호 어기고도주한 흑인 ...60발 총격 사살한 경찰 : (중복)
- 7월31일, 경기 화성서 우즈베크인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수사 : (중복)

<표12> OBS '뉴스중심' 범죄 보도 빈도분석

OBS '뉴스중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75	0	75
	%	100	0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75	0	75
	%	100	0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75	0	75
	%	100	0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74	1	75
	%	98.7	1.3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75	0	75
	%	100	0	100

- 4월12일, 인천 섬 지역도 '보이스피싱 주의보'...정보 통신사 대응 절실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겪는 경우가 많은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제시함. 이 중 과거 한 방송에서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지망생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자세히 공개함. 방송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이었던 만큼 일반인의 신상노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표13> 채널A '뉴스A' 범죄 보도 빈도분석

채널A '뉴스A'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95	2	97
	%	97.9	2.1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97	0	97
	%	100	0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90	7	97
	%	92.8	7.2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96	1	97
	%	99	1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95	2	97
	%	97.9	2.1	100

- 4월4일, 계곡 살인 '조현수', 네티즌 100명 고소해 합의금 챙겨 : 수사 중인 상태에서 공범

등의 표현 사용

- 4월28일, 간첩된 현역 장교, 용산 벙커 노렸다..군기밀 수차례 유출 : 검거된 대위나 민간업자의 반론 혹은 변호가 보도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나 민간업자의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4월20일, 입 코만 남기고 생매장된 푸들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당시 피해 동물의 상태가 영상에 노출되었음.
- 4월28일, 기사에게 딱 걸린 성추행..경찰 지구대 직행한 버스 : 성추행 당시 버스 내 영상(모자이크처리함)을 통해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방송됨.
- 5월12일,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50여명 그냥 지나갔다 : 노인 폭력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 앵커의 해설과 함께 보면 폭력행위가 상세하게 파악됨.
- 6월13일, 中 식당서 여성 집단폭행 '발각'..'젠더 이슈'시끌 : 폭력사건 CCTV영상 모자이크 처리하였지만 폭행장면 노출.
- 7월12일, 출소 1년 만에 또...귀갓길 여성 노려 강도 행각 : 가해자가 여성을 뒤에서 덮치고 목을 조르는 모습,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 등 CCTV 영상(모자이크처리)을 통해 상세히 묘사.
- 8월11일, 등산용 곡괭이 꺼내 대리기사 위협..."우산인줄" : 등산용 곡괭이를 꺼내 대리기사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 번 송출, 범죄내용을 상세히 묘사함
- 8월16일, 쌍방폭행이라던 승려 "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사과" : 승려들이 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 피해자(박정규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함

<표14> TV조선 'TV CHOSUN 뉴스9' 범죄 보도 빈도분석

TV조선 'TV CHOSUN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112	0	112
	%	100	0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12	0	112
	%	100	0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09	3	112
	%	97.3	2.7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10	0	112
	%	98.2	1.8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11	1	112
	%	99.1	0.9	100

- 7월15일, 목줄 풀린 개, 어린이 공격...택배기사가 구해 : 목줄 풀린 개가 아이를 공격하는 영상이 블러처리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반복 재생됨.
- 7월20일, 정화조 청소 '가스중독'...1명 사망, 2명 중태 : 사망자들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식의 인터뷰,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함.

<표15> MBN 'MBN 종합뉴스' 범죄 보도 빈도분석

MBN 'MBN 종합뉴스' 범죄 보도 빈도분석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105	8	113
	%	92.9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11	2	113
	%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07	6	113
	%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09	4	113
	%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13	0	113
	%			

- 4월28일, 버스에서 자리 옮기며 연달아 성추행...지구대로 차 몰아 검거 : 성추행 상황을 다소 구체적으로 묘사함
- 5월9일, 지옥으로 변한 병원 : 폭력 행사하는 모습의 영상 그대로 보여줌
- 5월25일, 여장 유투버 '방송도중 폭행'...경찰 조사 : 폭행 장면 직접 보여줌
- 6월18일, "전처가 종교에 빠져서"...계획 범죄 수사 : 피가 묻은 흉기 공개
- 7월15일, 아이가 울어도 계속 물속으로 쳐박아...'물놀이 학대' 어린이집 수사 : 블러처리를 했지만 물에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아넣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음
- 7월15일, 쓰러진 8살 아이 2분간 목, 팔, 다리 습격...진돗개 잡종 안락사 결정 : 블러처리가 부분적으로 되어 아이가 개에게 쫓기다가 끌려가는 모습이 노출됨

<표16> JTBC '뉴스룸' 범죄 보도 빈도분석

JTBC '뉴스룸' 범죄 보도 빈도분석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R1.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단정짓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빈도	109	2	111
	%	98.2	1.8	100
CR2. 범죄 행위를 과장, 정당화 하는 듯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10	1	111
	%	99.1	0.9	100
CR3. 폭력, 살인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02	9	111
	%	91.9	0.1	100
CR4.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얼굴, 주소, 음성, 그밖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10	1	111
	%	99.1	0.9	100
CR5. 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10	1	111
	%	99.1	0.9	100

- 6월24일 : 장애 딸 살해한 암 투병 50대 엄마...징역 6년 : 지적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지원의 부족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지만 가해자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음

- 4월4일, 러시아군 퇴각한 도시서 시신 410구 발견..."민간인 학살" : 학살당한 피해자의 시신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형제 짐작 가능
- 5월17일, "내 이름 쓴 몸 사진 보내라" n번방처럼 협박 : SNS메시지 내용 상세 공개, 일부 구체적인 성폭력 행위 보도
- 5월25일, 살인건 발뺌하더니.. 불법 개사육장 주인 맞았다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영상(모자이크처리) 송출
- 6월10일, 출발 7분만에 '평'..전날부터 치밀한 준비 : 살해 준비과정부터 건물 침입, 사용 도구 등 CCTV영상부터 상세하게 범죄 내용 묘사
- 6월10일, 희생자 2명 흉기 찔린 상처..사무실 곳곳 혈흔 : 상동

(3) 성폭력 보도 모니터링 결과

<표17> KBS1 '뉴스9' 범죄 성폭력 빈도분석

KBS1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4	2	16
	%	87.5	12.5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5	1	16
	%	93.8	6.2	100

- 7월15일, 캠퍼스에서 20대 여학생 사망...동급생 '강간치사 혐의' 체포 : 보도 내용에서 피해자가 인하대학교 1학년이며 본인이 다니던 단과대 건물에서 추락했음을 밝힘. 발견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도함.
- 8월24일,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소환' : 사건을 명명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했으나 유족 측에서 공개하였음.

<표18> MBC '뉴스데스크'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MBC '뉴스데스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5	1	16
	%	93.8	6.2	100

- 7월28일, 남학생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 수백 장..학교 발각 :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 관한 보도인데, 뉴스 영상에서 불필요하게 여학생들의 다리와 신체를 촬영하여 보도함.

<표19> SBS '8뉴스'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SBS '8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0	2	12
	%	83.3	6.7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2	0	12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2	0	12
	%	100	0	100

- 4월4일, "상황극하자' 채팅앱 유도에 범행..중형 받는다 : (중복)
- 7월15일, 교내에서 사망한 인하대 여학생...같은 학교 남학생 체포 : 피해자가 인하대 1학년 생임을 밝힘

<표20> OBS '뉴스중심'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OBS '뉴스중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4	1	5
	%	80	20	8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80	2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4	1	5
	%	80	20	80

- 7월15일, 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 피의자 긴급체포 : 인하대 1학년이라는 인적 사항 공개,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자극적임.

<표21> 채널A '뉴스A'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채널A '뉴스A'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5	1	16
	%	93.8	6.2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 7월15일, 여대생 교내 사망...20대 남성 긴급체포 : 성폭력 피해자가 인하대학교 1학년임을 공개함

<표22> TV조선 'TV CHOSUN 뉴스9'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TV조선 'TV CHOSUN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100	0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100	0	100

<표23> MBN 'MBN 종합뉴스'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MBN 'MBN 종합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4	2	16
	%	87.5	12.5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6	0	16
	%	100	0	100

- 7월12일, "내 아내 성폭행했다"..동료 살해한 대청도 공무원 체포 : '인천서해 최북단에 있는 대청도 면사무소'라는 표현으로 거주지역과 살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의 직장을 공개함

- 7월15일, 대학 캠퍼스 내에서 1학년 여학생 숨져...함께 술 마신 남학생 긴급체포 : 사건이 발생한 학교명(인하대)과 피해자가 그 학교 학생임을 밝힘.

<표24> JTBC '뉴스룸' 성폭력 보도 빈도분석

JTBC '뉴스룸'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V1.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20	3	23
	%	86.9	13.1	100
SV2.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저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23	0	23
	%	100	0	100
SV3.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20	3	23
	%	86.9	13.1	100

- 5월17일, "내 이름 쓴 몸 사진 보내라" n번방처럼 협박 : SNS메시지 내용 상세 공개, 일부 구체적인 성폭력 행위 보도
- 5월9일, "친해지려면 신체 사진 좀" 한국인 친구 사귀려다..: 피해자와의 인터뷰 통한 얼굴, 이름(가명), 목소리, 출신국가 공개, 성희롱 카톡방 내용 일부 그대로 공개
- 7월15일, 인하대 학생 교내 사망...동급생 '강간치사 혐의'체포 : 학교와 학년 공개,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와 바지가 발견되었다는 등 자극적인 묘사.

(4) 자살 보도 모니터링 결과

<표25> KBS1 '뉴스9' 자살 보도 빈도분석

KBS1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표26> MBC '뉴스데스크' 자살 보도 빈도분석

MBC '뉴스데스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5	0	5
	%	100	0	100

<표27> SBS '8뉴스' 자살 보도 빈도분석

SBS '8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표28> OBS '뉴스중심' 자살 보도 빈도분석

OBS '뉴스중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표29> 채널A '뉴스A' 자살 보도 빈도분석

채널A '뉴스A'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표30> TV조선 'TV CHOSUN 뉴스9' 자살 보도 빈도분석

TV조선 'TV CHOSUN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표31> MBN 'MBN 종합뉴스' 자살 보도 빈도분석

MBN 'MBN 종합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50	50	100

<표32> JTBC '뉴스룸' 자살 보도 빈도분석

JTBC '뉴스룸'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SU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SU2. 자살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SU3.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5) 재난 보도 모니터링 결과

<표33> KBS1 '뉴스9' 재난 보도 빈도분석

KBS1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53	0	53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50	3	53
	%	94.3	5.7	100

- 7월31일, "우크라 짓"vs "러 테러"...포로 수용소 포격 공방 : 천에 덮인 시신이 불러 처리되어 화면에 노출,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함.
- 8월8일, 인천 도심 등 도로 곳곳 '물바다' : 추락사, 감전사한 노동자의 시신이 모자이크 되어 화면에 노출되었지만 영상이 아닌 사진이라는 점과 신원노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보도에 필요한 정도였다고 판단함.
- 8월11일, 공습피해 교실 바닥에 숨은 미얀마 아이들...유엔, "여성 아동 범죄 크게 증가" : 미얀마의 학교 시설 대상공습 영상이 화면에 노출되었으며 공습 대상이 된 학교 학생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 국내 사건에 비해 해외 사건으로 인한 외국인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34> MBC '뉴스데스크' 재난 보도 빈도분석

MBC '뉴스데스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101	0	101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101	0	101
	%	100	0	100

<표35> SBS '8뉴스' 재난 보도 빈도분석

SBS '8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82	0	82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77	5	82
	%	93.9	6.1	100

- 4월4일, 민간인 집단학살 참상에 "전쟁범죄"...러시아는 "조작돼" : 집단 학살 참상 시체의 신원과 시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시신 영상을 계속 노출함.
- 4월7일, 러시아는 발뺌하지만, '민간인 학살' 증거 잇따라 나온다 :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 학살 증거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함.
- 7월15일, 러시아군 또 무차별 폭격...4살 유아도 참변 : 피격건물주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 어린이 사망자의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SNS에 공개되었던 엄마와의 모습을 노출, 전쟁 중이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8월24일, "아빠!" 곳곳서 터진 절구 ... 6개월 간의 전쟁 참상 : 박격포 공격에 숨진 피란민들,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람들,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보여줌.

<표36> OBS '뉴스중심' 재난 보도 빈도분석

OBS '뉴스중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29	0	29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28	1	29
	%	96.6	3.4	100

- 4월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집단 학살 의혹...제재 논의 : 러시아의 부차 학살을 보도하는 내용,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시신의 안면부가 지나치게 자세히 드러나는 영상 노출.

<표37> 채널A '뉴스A' 재난 보도 빈도분석

채널A '뉴스A'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30	0	30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24	6	30
	%	80	20	100

- 4월4일, 러군 퇴각한 도시에 참혹한 '민간인 학살'경악 : 부차학살 관련보도로 매장터의 시신 봉투 및 시신 파편 영상을 흐리게 처리해 보도
- 4월7일, 자전거 타는 시민 향해 러군 장갑차서 '뿜'..민간인 학살 영상공개 : 시신이나 피해자 영상을 불러처리해 송출
- 4월12일, "러, 드론으로 화학무기 살포"..우크라 마리우폴 '사망 2만 명' :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으나 아동 사망자 영상을 포함, 인명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이 다수 방송.
- 6월10일, "러군이 쏜 총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집단학살' 현장 가보니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긴 하였지만 잘린 신체부위나 시신 등 자극적인 영상

<표38> TV조선 'TV CHOSUN 뉴스9' 재난 보도 빈도분석

TV조선 'TV CHOSUN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48	0	48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47	1	48
	%	97.9	2.1	100

- 4월4일, 민간인 집단 학살..."보이는 대로 썼다" : 집단 학살된 민간인 시신들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 불러처리하여 보여줌.

<표39> MBN 'MBN 종합뉴스' 재난 보도 빈도분석

MBN '종합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46	0	46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46	0	46
	%	100	0	100

<표40> JTBC '뉴스룸' 재난 보도 빈도분석

JTBC '뉴스룸'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D1.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빈도	61	0	61
	%	100	0	100
D2. 피해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빈도	60	1	61
	%	98.4	1.6	100

- 4월7일, 러 탱크 길가던 민간인 쫓다...우크라 드론에 찍혀 : 피해자 시신 수습과정 영상 공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만 피범벅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음

(6) 아동·청소년 보도 모니터링 결과

<표41> KBS1 '뉴스9'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KBS1 '뉴스9'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8	3	11
	%	72.7	27.3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10	1	11
	%	90.9	9.1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11	0	11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 4월28일,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 '정인이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건을 명명하고 피해자의 사진도 공개함.
- 6월29일, 완도 실종 일가족 추정 3명 숨진 채 발견...사망경위 조사(사건사고와 중복)
- 8월21일,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에 또 폭격.."핵사고 우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포격 피해자 중 어린이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영상에서 병실에 있는 아이의 얼굴이 나왔으나 해당 아동이 피해자 당사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고 해당 아동을 피해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신상정보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표42> MBC '뉴스데스크'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MBC '뉴스데스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6	1	17
	%	94.1	5.9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17	0	17
	%	100	0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17	0	17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0	0	10
	%	100	0	100

- 4월28일,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 피해자 실명 사용

<표43> SBS '8뉴스'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SBS '8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0	1	11
	%	90.9	9.1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7	1	8
	%	87.5	12.5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8	0	8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 4월28일, 대법원,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는 5년형 선고 : 피해자 이름과 사진 공개
- 5월9일, '강제 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 : (범죄보도와 중복)
- 7월28일, 장애인은 아닌 '경계선 지능'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 (사건사고와 중복)

<표44> OBS '뉴스중심'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OBS '뉴스중심'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0	2	2
	%	0	100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2	0	2
	%	100	0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3	0	3
	%	100	0	100

- 4월28일, 16개월 정인이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 아동학대 피해자 실명 사용
- 6월29일, '실종'조유나 양 가족 탑승 승용차서 시신 3구 발견 : 아동피해자 실명 사용

<표45> 채널A '뉴스A'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채널A '뉴스A'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5	2	7
	%	71.4	28.6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6	1	7
	%	85.7	14.3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7	0	7
	%	100	0	100

- 4월28일, 정인이 양모 35년형, 양부 5년형 확정..법원 밖은 분노 : 사건을 명명하는데 피해 아동의 이름을 사용함
- 6월29일, 29일 만에 인양...펜션 떠날 때 그 옷차림 : 아동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학대 행위가 재연된 것은 아니지만 차량 인양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발견당시 가족들의 위치와 상태 등을 묘사함.

<표46> TV조선 'TV CHOSUN 뉴스9'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TV조선 'TV CHOSUN 뉴스9'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3	1	4
	%	75	25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4	0	4
	%	100	0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4	0	4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4	0	4
	%	100	0	100

6월29일, 인양차량서 시신 3구 발견..."실종 일가족과 옷차림 동일"

<표47> MBN 'MBN종합뉴스'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MBN 'MBN종합뉴스'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5	1	6
	%	66.7	33.3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4	2	6
	%	66.7	33.3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6	0	6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1	0	1
	%	100	0	100

- 4월28일,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이유는? : 피해자 아동의 이름을 사건에 명명
- 7월15일, 아이가 울어도 계속 물속으로 쳐박아...'물놀이 학대' 어린이집 수사 : (범죄보도와 중복)

<표48> JTBC '뉴스룸' 아동·청소년 보도 빈도분석

JTBC '뉴스룸'				
항목		준수	미준수	합계
CH1.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7	1	8
	%	87.5	12.5	100
CH2.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았다	빈도	7	1	8
	%	87.5	12.5	100
CH3.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빈도	8	0	8
	%	100	0	100
CH4. 범죄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빈도	4	0	4
	%	100	0	100

- 4월28일,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희생 잊지 말아달라" : 아동학대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 공개
- 6월10일, "죽일 거야"...공포의 손도끼 아이들 쫓아왔다 : 남성이 흉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고 아이들이 도망가는 영상
- 6월29일, 실종 직전 '수면제, 루나'검색...주변선 "코인 투자 실패" : 조유나양 실명 사용 (사건사고와 중복)

5.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항목에 대한 분석

8개 방송사의 총 320회 분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항목별 빈도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준수의 비율은 각 항목 당 10% 내외로 대체로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모니터링의 목적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미준수 사항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 보도 내용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입장 생각하지 않는 CCTV 영상 공개

7월15일 TV조선의 '목줄 풀린 개, 어린이 공격...택배기사가 구해'와 MBN의 '쓰러진 8살 아이 2분간 목, 팔, 다리 습격...진돗개 잡종 안락사 결정' 보도에서 목줄 풀린 개가 아이를 공격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는데 아이가 개에게 쫓기다가 끌려가는 모습과 쓰러진 채 공격을 당하는 모습 등이 블러처리가 되었음에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식별 가능하였다. 또한 같은 날 MBN '아이가 울어도 계속 물속으로 쳐박아...'물놀이 학대' 어린이집 수사' 보도에서도 블러처리를 했지만 교사가 아이를 물에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아넣는 모습 등 학대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5월9일 SBS의 '강제 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에서는 또 다른 초등생을 학대하는 CCTV영상을 모자이크하였는데 관장이 아이를 때리는 모습,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7월12일 채널A의 '출소 1년 만에 또...귀갓길 여성 노려 강도 행각'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을 뒤에서 덮치고 목을 조르는 모습,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 등이 CCTV 영상(모자이크처리)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진위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수사에서는 물론 보도에서도 CCTV영상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람들의 얼굴만 인식이 불가능할 뿐 당시 상황과 행위들이 충분히 인식가능하고, 문제의 장면들을 반복하여 노출하는 것은 폭행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트라우마 등 2차 피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2) 피해자의 실명 언급

4월28일자 보도에서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아이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전하며 모든 방송사가 '정인이'라는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줄곧 '정인이 사건'이라 명명되었고 사진도 함께 공개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 중심의 사건 명명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건명을 달리 했어야 한다.

6월29일자 완도에서 실종된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망자들과 차량의 인양 보도³⁾에서 MBC, SBS, MBN 3개의 방송사에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실종된 초등학생'이나 '조양' 등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5개 방송사는 '조유나'라는 실명을 모두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미 실종경보 발령으로 전국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실명보도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발견이 되어 실종경보가 종료된 시점에서까지 어린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전혀 이로운 점이 없다. 또한 인양과정을 중계방송 하듯이 보여주고 차 안에서 사망자들의 위치 등을 상세히 알려준 점, 아직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다는 전제로 주민인터뷰를 진행한 점은 피해아동을 비롯한 사망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식이 결여된 보도라고 생각된다.

앞의 이 두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과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면에서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이보다는 시청자들의 귀에 익숙한 명명으로 보도를 빨리 접하게 하는 관행에만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개된 실명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SBS의 4월7일 보도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평계곡 사망 당일 영상 공개...겉먹은 고인 두고 조롱' 보도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PD가 입수한 일명 '계곡살인사건' 당일 영상을 공개하며 가평 계곡 사망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한 번 공개되었다고 해도 이후의 파급력이나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생각한다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성범죄에 대한 보도 태도

7월15일 발생한 '대학내 성폭행 사망사건' 보도의 경우 MBC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KBS, SBS, OBS, 채널A, MBN, JTBC의 경우 '인하대 1학년'이라는 인적 사항의 일부를 공개하였다.(TV조선은 해당 일에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KBS, OBS, JTBC는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였는데 불필요한 자극적 묘사로 판단된다.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일부 공개된 인적 사항에서 추

3) 6월29일에 보도된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해서 본 모니터링에서는 당일 차량이 인양되었고 시신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가항목 중 자살이 아닌 사건사고와 아동청소년 항목에 만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정되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학교명과 같은 학교 동급생임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였다. 또한 피해자 발견당시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자칫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만 부각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들은 방송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앞을 다투어 보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도준칙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특히 방송의 경우 공익성과 신뢰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월 28일 MBC의 단독 보도인 '남학생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 수백 장..학교 발각'에서는 보도 내용과 무관한 여학생들의 신체일부(다리 등)를 불필요하게 자료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남학생들의 불법 촬영 사건을 보도하면서 보도를 위한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일부를 부각하여 보여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 전달방식 개선이 필요한 전쟁보도와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무감각한 보도들

이번 모니터링 기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집단학살이나 폭격에 의한 사망자 발생 보도에서는 시신들이 쌓여있는 모습, 시신들을 수습하는 장면 등이 불러치리가 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보도들이 양적인 면에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극적인 전달방식으로 전쟁 상황의 단편적인 장면들만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더 신중한 편집을 요한다. 이것과 더불어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 노출 역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SBS 7월15일자 보도인 '러시아군 또 무차별 폭격...4살 유아도 참변'에서는 모자이크 없이 SNS에 공개되었던 엄마와 유아의 모습이 노출되었다. 또 다른 뉴스인 KBS 8월11일자 '공습 피해 교실 바닥에 숨은 미얀마 아이들...유엔, "여성 아동 범죄 크게 증가"'에서는 미얀마의 학교 시설 대상공습 영상 중 공습 대상이 된 학교 학생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되었다. 전쟁보도는 아니지만 JTBC의 5월9일 보도 "'친해지려면 신체 사진 좀' 한국인 친구 사귀려다..' 는 피해자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얼굴, 목소리, 출신국가가 모두 공개되었으며 성희롱적인 대화가 오고간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하였다. 특히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면서도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외국인 제보자에 대한 인권보호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공인의 가족은 공인인가?

5월4일 MBC '조개 잡아 밀물예..'와 채널A '갯벌서 조개 캐던 70대 참변...개그맨 김병만 모친상' 보도에서는 70대 여성이 조개를 줍다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가 개그맨 김병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유명인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사고 당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이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6. 분석의 의미와 한계

내용분석 결과 CCTV 영상 공개나 성범죄보도, 아동학대 보도들은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보도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소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국제뉴스나 외국인을 보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초상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더 이상 국내 보도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모니터링은 특정한 이슈나 주제 혹은 특정한 시기(선거 등)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보도프로그램들이 인권의식 혹은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빈도수가 적음에도 각 평가항목별 미준수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방송보도의 잘못된 관행 등을 찾아보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함이었다.

또한 모니터링에 적용한 지표가 심의규정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이 자체가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가 아니므로 항목 미준수가 규정위반에 준하는 것은 아니며 방송사별 미준수 빈도 차이 역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사 양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인권보호적인 방송사와 그렇지 못한 방송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이번 분석은 언론인권센터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에서 '인권보호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로, 모니터링의 과정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사건사고, 범죄보도, 성폭력, 자살, 재난 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데 기획취재나 심층취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미담취재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에서도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적절한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항목을 아동학대와 청소년가해자와 관련된 항목들로만 구성,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문제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카테고리 항목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건사고와 성폭력 보도 카테고리에서의 중복되는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일차 모니터링 시트 작성 후 각 채널별 담당자 혹은 프로그램별 담당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표가 있다고 해도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방송보도의 '인권보호'를 평가하는 지표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마련하고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송보도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인권보호 관련 방송 심의 결과 분석 (2020년 1월~2022년 8월)

1.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제재 사유별 의결현황⁴⁾

4) 2021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5., pp.43-53 <표2-2-9> 지상파텔레비전 제재사유별 의결현황

<표49> 지상파 텔레비전 제재 사유별 의결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광고효과 등	14	26	40(20.8)	4	14	18(26.4)
객관성	30	-	30(15.6)	3	2	5(7.4)
품위유지	6	5	11(5.7)	-	5	5(7.4)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보호	-	6	6(3.1)	-	5	5(7.4)
윤리성	4	-	4(2.1)	-	3	3(4.4)
양성평등	1	4	5(2.6)	-	3	3(4.4)
폭력묘사	-	1	1(0.5)	-	3	3(4.4)
범죄 및 악물묘사	10	-	10(5.3)	3	-	3(4.4)
방송언어	1	8	9(4.7)	-	3	3(4.4)
통계 및 여론조사	5	-	5(2.6)	2	-	2(2.9)
법령의 준수	3	3	6(3.1)	1	1	2(2.9)
충격, 혐오감	1	1	2(1.0)	-	2	2(2.9)
방송사고	2	-	2(1.0)	2	-	2(2.9)
사생활 보호	7	15	22(11.6)	1	-	1(1.5)
건전성	1	1	2(1.0)	-	1	1(1.5)
가학적, 피학적 묘사	-	-	0(0.0)	-	1	1(1.5)
명예훼손 금지	1	2	3(1.6)	-	1	1(1.5)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등	2	-	2(1.0)	1	-	1(1.5)
어린이학대 사건보도등	-	-	0(0.0)	1	-	1(1.5)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	-	0(0.0)	-	1	1(1.5)
문화의 다양성 존중	-	1	0(0.0)	-	1	1(1.5)
기타	25	6	31(16.2)	1	3	4(5.8)
계	113(58.9)	79(41.1)	192(100)	19(27.9)	49(72.1)	68(100)

<표50>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제재 사유별 의결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객관성	61	-	61(35.9)	19	2	21(36.8)
간접광고	-	7	7(4.1)	-	7	7(12.2)
방송언어	2	3	5(2.9)	2	3	5(8.7)
범죄 및 악물묘사	6	-	6(3.5)	4	-	4(7.0)
통계 및 여론조사	5	-	5(2.9)	4	-	4(7.0)
품위유지	15	4	19(11.2)	2	1	3(5.2)
사생활 보호	4	1	5(2.9)	2	-	2(3.5)
명예훼손 금지	2	-	2(1.2)	1	-	1(1.8)
인권 보호	4	1	5(2.9)	-	1	1(1.8)
범죄사건 보도 등	-	-	0(0.0)	1	-	1(1.8)
광고효과	2	-	2(1.2)	-	1	1(1.8)
대담 토론프로그램	10	-	10(5.9)	1	-	1(1.8)
공정성	1	-	1(0.6)	1	-	1(1.8)
법령의 준수	-	4	4(2.3)	-	1	1(1.8)
출처명시	1	-	1(0.6)	1	-	1(1.8)
충격 혐오감	1	-	1(0.6)	1	-	1(1.8)
방송사고	1	-	1(0.6)	1	-	1(1.8)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보호	-	-	0(0.0)	-	1	1(1.8)
자살묘사	12	-	12(7.1)	-	-	0(0.0)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등	6	-	6(3.5)	-	-	0(0.0)
양성평등	1	4	5(2.9)	-	-	0(0.0)
재난방송	2	-	2(1.2)	-	-	0(0.0)
수용수준	-	2	2(1.2)	-	-	0(0.0)
성표현	-	2	2(1.2)	-	-	0(0.0)
의료행위 등	2	-	1(0.6)	-	-	0(0.0)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	-	1(0.6)	-	-	0(0.0)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	1(0.6)	-	-	0(0.0)
폭력묘사	-	1	1(0.6)	-	-	0(0.0)
가상광고	-	1	1(0.6)	-	-	0(0.0)
계	140(82.4)	30(17.6)	170(100)	40(70.7)	17(29.3)	57(100)

2020년 지상파 채널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중 인권관련 조항으로 '의견제시' 이상의 심의의결을 받은 건수는 32건, 2021년은 6건으로 전체 의결건수 대비 각각 28.3%와 31.6%이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중 2020년 인권관련 조항으로 '의견제시'이상의 심의의결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4건, 2021년은 11건이며 전체 의결건수 대비 각각 38.6%와 27.5%이다. 2021년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상반기에 의결건수가 없었으므로 2020년과 2021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2022년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심의의결현황이 나오기 전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 현재 8월까지의 심의의결 결과 중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은 지상파채널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6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5건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위반 정도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이상 행정지도), 제재조치, 과징금 부과(이상 법정 제재) 등으로 이루어지며 제재조치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정정·수정중지로 이루어진다. 앞의 (인권보호 관련)의결 안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관련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의' 결정 안건

해당 기간의 의결 내용 중 YTN '뉴스특보', TV조선 '뉴스현장', MBN '종합뉴스'가 자살한 정 의연 쉼터 소장 자택의 내부를 클로즈업 한 내용으로 38조의2(자살묘사) 위반, 주의 결정을 받았으며 MBC '뉴스데스크'는 이모 부부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영상을 방송하여 21조의4 (어린이 학대사건 보도 등)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특히 학대 아동의 영상은 재판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 및 세부 학대 내용과 부검 감정 내용 등을 전하며 나체 상태의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욕실 청소를 하고 허벅지의 멍자국 및 학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빨랫줄을 멈춤 화면 등으로 방송하였고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삽화처리하여 보여주는 등 가해 행위가 담긴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 노출하였다.

3. '권고' 결정 안건

인권관련 조항들의 위반과 관련, 보도교양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치는 권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극적인 내용이거나 폭행하는 영상이 여과없이 방송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여 대부분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치고 있다.

2020년 2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시신 위에 당시 모습을 스케치한 이미지를 내보내는 등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묘사로 2차 가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의 방송내용이라는 점과 내용 설명을 위한 자료화면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해당 결정을 받았다.(39조(재연연출))

또한 같은 방송사의 '궁금한 이야기 Y'는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목을 구체적으로 노출, 시청자에게 대화방 이용에 대한 모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건사고 관련 내용전달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결정을 받았으며(38조(범죄 및 약물묘사)) MBC와 SBS뉴스 및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된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보도의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였다.(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이 외에도 박원순시장 시신 수습장면을 보여준 다수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살사건 현장의 자극적 묘사는 인정하면서도 흐림처리 등 나름의 사전적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에 그쳤다.(27조(품위유지) 38조의2(자살묘사))

4. '의견제시' 결정 안건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노인의 성폭력 피해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룬 것은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시청자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점과 영상을 피해자측이 제공한 것 등을 감안하여 '의견제시'결정을 받았다.(21조의3(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TV조선 '뉴스9'과 MBC '뉴스데스크'의 악성댓글 관련 보도에서 특정인(연예인 설리 등)에 대한 악성댓글을 여과없이 노출하여 해당인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나 악성댓글의 심각성을 전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결정이 내려졌다.

당사자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안 모두 매우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모두 2차 피해를 예상하고도 방송을 하였고 심의과정에서는 2차 피해의 우려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더 무게를 두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2차 피해를 상쇄할만한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5. 공익적 목적과 인권보호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주의가 가장 높은 수위의 결정이었다. 권고나 의견제시 결정을 받은 내용들은 대부분 자극적 표현이나 선정성, 모방의 위험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취지나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은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것의 범주 안에는 개인의 인권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의 명분을 앞세워 인권보호는 소홀히 한 채 무리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구시대적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 심의기구의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IV. 결론

'인권'은 어렵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개념적으로는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실현시키고 지켜내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기에 언론이나 미디어를 '인권보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역시 어렵다.

이번 모니터링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인권보호지표'라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방송보도가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완벽히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차적으로 카테고리화 평가항목을 통해 보도들을 선별하고 내용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방송보도의 영역은 다른 매체에 비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방송보도가 인권보호적인 관점의 보도를 지향한다면 다른 매체들의 기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방식 역시 본문에서 제시했던 개선점들을 바탕으로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해 나가면서 높아져가는 인권의식에 부합하는 방송보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방송사 및 심의기구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보도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심의 기구의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낮은 수위의 결정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높은 수위의 제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정의 배경에 항상 '공익적 목적에 부합'이 있다는 것은 자칫 개인의 인권보다 공익의 가치가 높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공기와 같다. 무언가를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무언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것이 아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가치이다. 방송보도도 심의의결도 무언가와 인권을 제로 섬으로 놓을 수는 없다.